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개정이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택임대차 임대보증금액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 제2항)
- 임대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도록 정함(안 제7조제6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의안번호	제58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출년월일 : 2002. 11. 2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주택임대차 임대보증금액을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7조제2항)
- 임대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도록 정함
(안 제7조제6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관할동장과 입주세대”를 “건물임대자·관할동장 및 입주세대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동장 및 임대보증금 용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①주택임대차계약은 <u>관할동장과 입주세대연명으로</u> 계약한다.</p> <p>②임대보증금은 세대당 <u>800만원</u>이하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u><신설></u></p>	<p>제7조(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①----- ----- <u>건물임대자·관할동장 및 입주세대가</u> -----.</p> <p>②-----<u>1,000만원</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u>동장 및 임대보증금 용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u></p>